

1.1 이 사 회 규 정

제정 : 1981. 12. 18.

개정 : 1998. 03. 01.

2000. 07. 01.

2006. 12. 01.

2016. 08. 08.

2021. 03. 25.

2022. 02. 23.

2022. 07. 15.

2023. 07. 01.

목 차

제1장 총 칙

- 제 1조 (목 적)
- 제 2조 (적용범위)
- 제 3조 (권 한)
- 제 4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 제 5조 (충실의무)
- 제 6조 (책 임)

제2장 구 성

- 제 7조 (구 성)
- 제 8조 (의 장)
- 제 9조 (이사회 내 위원회)

제3장 회 의

- 제10조 (종 류)
- 제11조 (소집권자)
- 제12조 (소집절차)
- 제13조 (결의방법)
- 제14조 (질서유지)

- 제15조 (부의사항)
- 제16조 (위임)
- 제17조 (긴급집행)
- 제18조 (감사의 출석 등)
- 제19조 (관계인의 출석)
- 제20조 (직무집행감독)
- 제21조 (이사회 의안)
- 제22조 (간사)
- 제23조 (의사록)
- 제24조 (규정의 개폐)

부 칙

이사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디엘건설 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의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 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의 요청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 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제5조 (충실의무)

- ① 이사는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가 속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이나 특정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책임)

이사 또는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2장 구 성

제7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8조 (의장)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의장이 유고시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장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⑥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10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소집권한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는 간사의 조력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 될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한 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질서유지)

- ①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 다. 재무제표의 승인
 - 라. 정관 변경
 - 마. 자본의 감소
 - 바.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 기 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자.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차.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타. 주식배당 결정
 - 파.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 하. 이사, 감사의 보수
 - 거.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라.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삭제)

마. 공동대표의 결정

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사.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자.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차.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카.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타.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파.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거.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투자에 관한 사항

나. 중요한 계약의 체결

다.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라. 결손의 처분

마.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바. 신주의 발행

사. 사채의 모집

아. 준비금의 자본전입

자. 전환사채의 발행

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카.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타.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파. 건별 자본총계의 5% 이상 회사채의 발행

하. 건별 자본총계의 5% 이상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기채사항 및 그

기간의 연장 (또는 외부기관 요청 시)

거.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 2.5% 이상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

(또는 외부기관 요청 시)

- 너. 계열회사를 위한 책임준공계약 체결
- 더.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 가.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나.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중요한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

표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3.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성과 검토
- 4. ESG에 관한 사항
 - 가. ESG 주요 분야 추진 방향 및 성과
 - 나. ESG 의무 공시 사항
-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임)

-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로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위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긴급집행)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사전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감사의 출석 등)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20조 (직무집행감독)

- ① 의장은 각 소관업무 담당임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의안)

이사회 심의안건은 당해 안건의 담당임원이 이사회 주관부서에 1일 전에 제출한다. 단, 긴급안건은 예외로 한다.

제22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경영기획 담당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간사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한다.

- ② 의결에 참석한 이사로서 이의가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1981년 12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개정)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개정)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개정)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개정) 이 규정은 2022년 0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개정) 이 규정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